

학습자가 꼭 알아야 할 학점은행제 필수 이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목 차

I. 학점은행제 소개	1
📖 학점은행제 소개	1
📖 이용 대상	4
📖 주요통계	5
II.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취득까지	7
📖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취득까지 한눈에 보기	7
📖 학습자등록이란?	10
📖 학점인정신청이란?	14
📖 학위신청이란?	18
III. 제도의 활용 및 주의사항	24
📖 학점은행제도 활용	24
📖 학점은행제도 이용 주의 사항	27
IV. 학습지원 및 FAQ	32
📖 증명서 발급	32
📖 상담 서비스	34

I 학점은행제 소개

■ 학점은행제 소개

○ 학점은행제란?(제도의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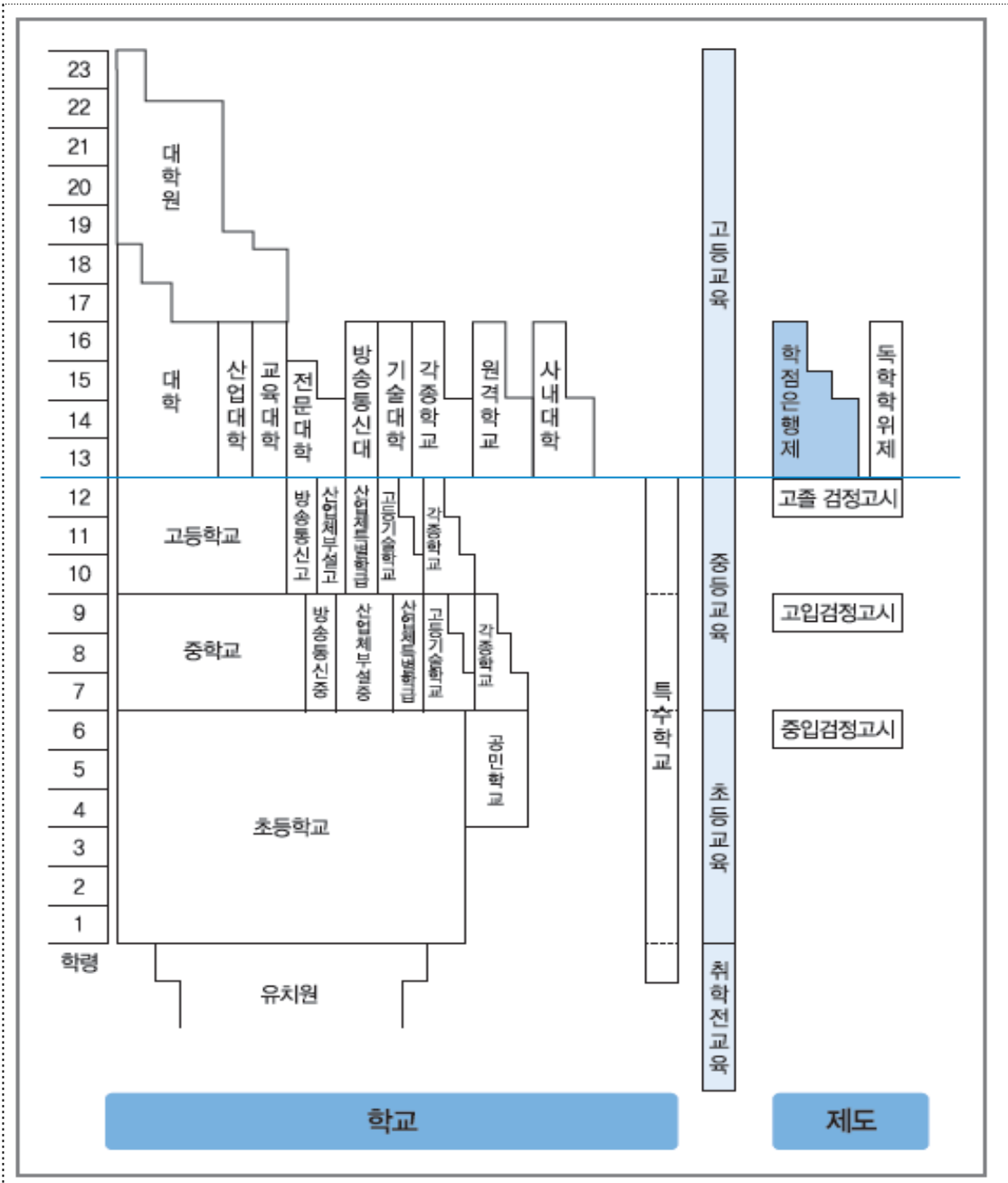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개방형 평생학습 제도입니다. 이는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한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학점은행제 제도의 취지]



[대한민국 학제]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시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사 학위취득 시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도입 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도입 배경]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각종 법·규정]

구분	발령자	비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2013.03.23 개정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2013.03.23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장관	2013.03.23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2.02.29 개정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출석기반, 원격기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2.04.05 개정
제19차 표준교육과정	교육부장관	2013.03.27 고시
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제17차 자격 학점인정기준 수정고시 (2013.4.30. 고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3.03.04 고시
2014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계획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3.11.25 공고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일부개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09.03.10 고시
학위취득일 이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2.08.29 공고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2013.03.27 고시

(2013.6. 현재 기준)

■ 이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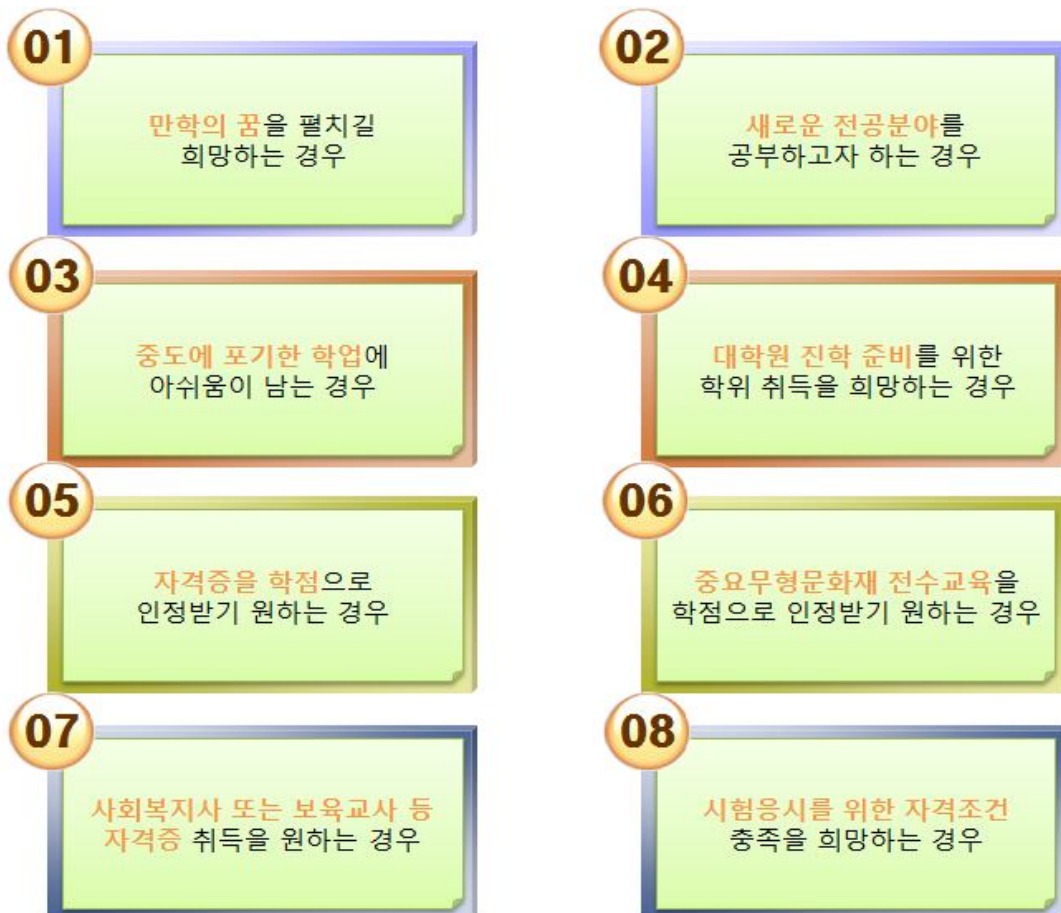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이용 사례]

-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진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로 등록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이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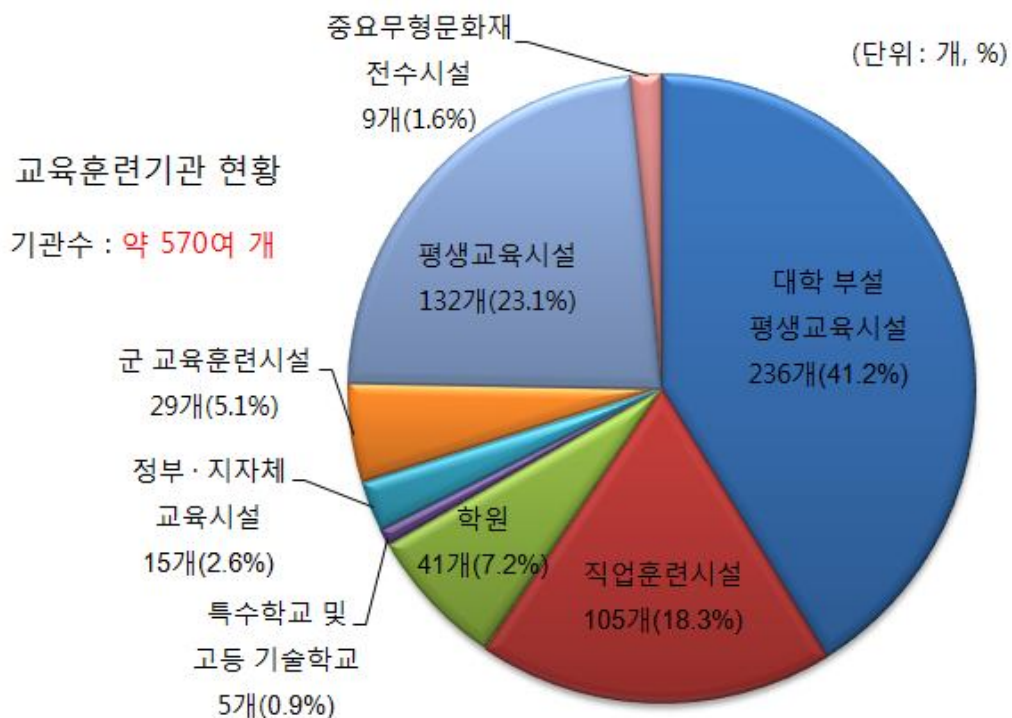


■ 주요통계

지금까지 약 92만명 이상의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위해 학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학사학위 약 217,000명, 전문학사 약 188,000명으로 405,000여 명의 학습자가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 시설을 비롯하여 직업 훈련시설, 학원,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정부/지자체 교육 시설, 군 교육훈련 시설, 평생교육시설, 중요무형문화재전수시설로 현재 약 57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현황]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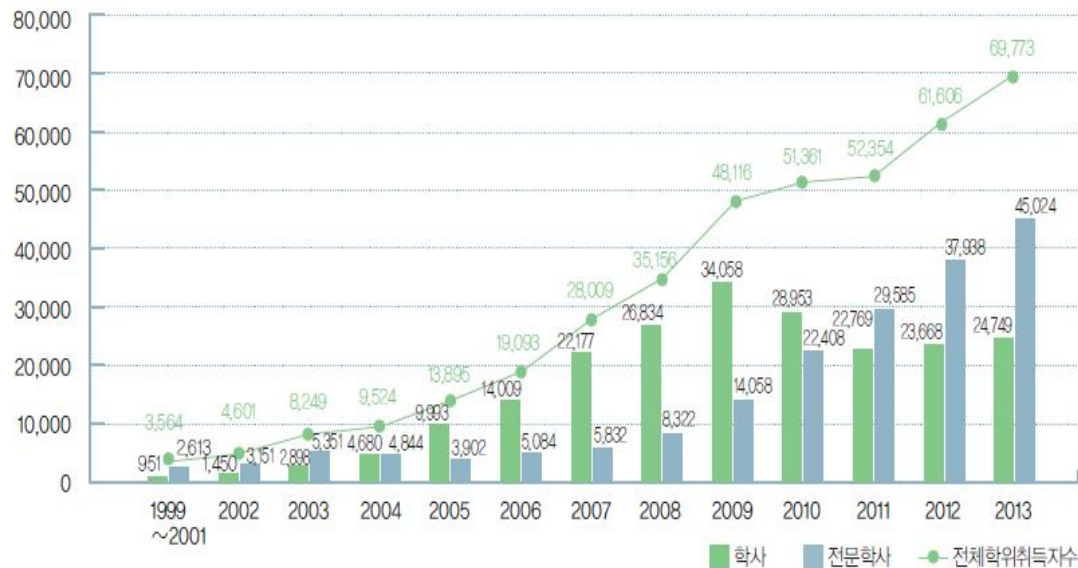
● 학습자 등록 현황

(단위 : 명)



●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 명)



II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취득까지

■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취득까지 한눈에 보기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흐름도]

	1. 학습자등록신청	⇒	2. 학점인정신청	⇒	3. 학위신청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		취득한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 (학위수여 요건충족)		등록된 학위과정/ 전공으로 학점은행제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단, 학위수여식은 2월만 실시)
내용	■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됨.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음.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는 학습자등록신청을 해야함.		학점인정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 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신청은 본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명의 학위신청에 대한 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신청 기간	1, 4, 7, 10월		1, 4, 7, 10월		■ 전기(2월) 학위 대상자 12월15일~ 다음해1월15일 ■ 후기(8월) 학위 대상자 6월15일~ 7월15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 교육기관 단체신청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 교육기관 단체신청		■ 온라인신청 ■ 교육기관 단체신청
신청 수수료	4,000원		1학점 당 1,000원		없음

주의
사항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먼저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 학점 취득은 각
교육기관 등에서
해야 하고, 학점을
취득한 이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으로 학점인정신청
을 해야 함.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이 좋음.

학위신청 마감일
전까지 학점인정
신청 등 모든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함.

■ 학습자등록이란?

-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기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학습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 1)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한 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신청	1.2~1.31	4.1~4.30	7.1~7.31	10.1~10.31
방문 신청 (본원, 시·도교육청)	방문신청기간은 분기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육기관 단체신청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 기간 방법 등을 문의			

※ 학습자등록신청과 학점인정신청은 신청기간 및 접수처가 동일하며, 두 개의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학습자등록신청은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학습자등록 방법 및 접수처]

구분	접수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층 NSC(서울 서초구 소재) 평일(월~금)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
	17개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평일(월~금)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교육기관 단체신청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제출서류

학습자등록신청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공통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② 최종학력증명서*	①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원본지참) ② 학습자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③ 최종학력증명서*			
	※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table><tr><th>국내 최종학력</th><th>최종학력증명서</th></tr><tr><td>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td><td>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를 통해 무료 발급가능 (www.neis.go.kr)</td></tr></table>	국내 최종학력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를 통해 무료 발급가능 (www.neis.go.kr)
국내 최종학력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를 통해 무료 발급가능 (www.neis.go.kr)				

	대학(전문대학) 졸업	학사(전문학사)학위 졸업증명서
	대학 재학 또는 제적	재(휴)학 혹은 제적증명서 (*중퇴한 경우,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2개 이상 대학 이수 시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전부
	석사 이상의 최종학력자의 경우에도 대학 졸업증명서(학사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는 본원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537번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안내']를 참고하여 필요서류 구비	
해당 자 필수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면허(자격)증명서” 원본제출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상단 [민원→의료인 면허 민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여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홈페이지→공지사항 730번 참고)	
비고	■ 다음의 경우 신청서 등을 우편발송 하지 않아도 됨 -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제외) : 학습자등록 온라인 신청 페이지 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확인된 학습자(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정보활용동의자) - 대학(전문대학) 재적 이상자: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 가 제공되는 대학 재적(졸업)자 (단, 결제 후 환불 불가)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 ■ 대리인 방문신청시 위임장, 학습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원본 지참) 제출(위임장: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26번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위임장']에 탑재

○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및 전공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은 평가인정과 학점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와 교육기관
에 안내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입니다.

개설 학위과정 및 전공은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위과정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이고, 전문학사 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전문학사 학위 혹은 학사학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미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별 선택 가능한 학위과정]

최종학력		학위과정 선택
고졸이상 누구나	➡	• 전문학사 학위 • 학사학위
전문대졸 이상	➡	• 전문학사(타전공)학위 • 학사학위
대졸 이상	➡	• 전문학사(타전공)학위 • 학사(타전공)학위

- 전공

‘제18차 표준교육과정(2013.3.1. 시행)’기준으로 학사 109개, 전문학사 109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학점인정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 **학습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 1) 취득한 학점은 실제 학점인정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2)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학점은행제 각종 신청·접수는 정해진 기간 중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학점인정신청 기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신청	1.2~1.31 (② 12.15~1.15)	4.1~4.30	7.1~7.31 (⑧ 6.15~7.15)	10.1~10.31
방문(본원, 시·도교육청)	방문신청기간은 분기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육기관 단체 신청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가능여부·기간·방법 등을 문의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②-2월, ⑧-8월)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신청방법

학점인정신청은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학점 당 1,000원입니다.

[학점인정신청 방법 및 접수처]

구분	접수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층 NSC(서울 서초구 소재) 평일(월~금) 09:00~17:00 (토·일, 공휴일 제외)
	17개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교육기관 단체신청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각종 신청 후 처리 현황 확인하기

신청 후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하기

신청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학적부조회, 각종접수현황]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종류 및 시기에 따라 처리완료까지 약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취득학점이 있을 경우 신청기간을 확인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혹은 교육기관 단체접수 하였을 경우에는 ‘각종접수현황’에서 접수내역이 즉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신청 시 신청 학점원별 제출 서류]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평가인정 학습과목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별지 제5호 및 제 5-2호 서식]
학점인정 대상학교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별지 제5호 및 제5-3호 서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시간제 등록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별지 제5호 및 제5-4호 서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자격취득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취득사실 상호 연계 가능한 일부 자격에 한하여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온라인 신청 가능 자격 관련 자세한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별지 제5호 및 제5-5호 서식] ■ 자격 사본(원본 지참)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독학사 시험합격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별지 제5호 및 제5-6호 서식]
독학사 시험면제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별지 제5호 및 제 5-6호 서식]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	
중요무형 문화재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별지 제5호 및 제5-5호 서식] ■ 이수등급별 제출서류 ■ 2014년 1분기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비고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 온라인 신청 페이지 내에서 직접 출력 해야 함.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내 '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되어 있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학습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위임장: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526번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위임장']에 탑재)

○ 학점원별 학점인정 대상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6가지 방법으로 이수한 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



• 평가인정 학습과목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4년제 대학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이수한 해당 대학 학점을 규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대학(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일반인에게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시간제 등록 제도를 통해 각 대학의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기술자격,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을 취득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독학학위제 과정 중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교육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경험은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위신청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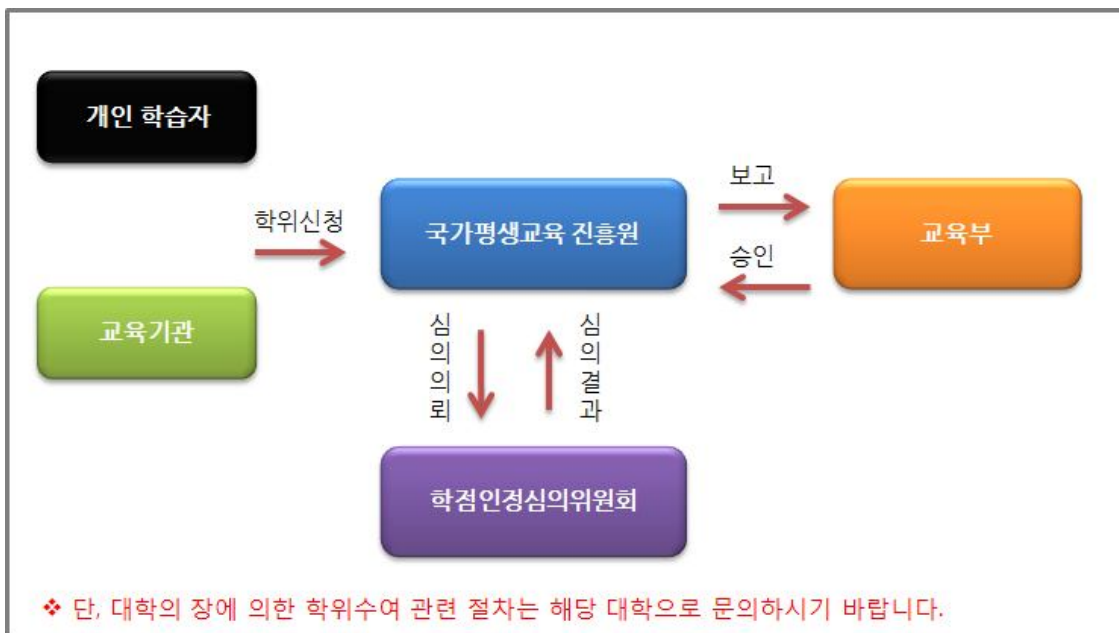
-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학위신청 시 주의사항

- 1)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2) 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3)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 혹은 대학의 장 명의로 수여받을 수 있고,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 학습자의 TIP

“학점은행제의 학점의 구분”

- [1]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2]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3]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학점은행제 학습 구분]

학점은행제 학점의 [학습구분]

- **전공** :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해당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학문영역별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 **일반선택** :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

✖ 학습자의 TIP

“전공 필수 요건과 일반선택 구분”

■ 전공필수 요건

전공필수는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으로,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에 따라 전공필수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 전공은 「제18차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5과목/15학점이 전공필수기준이고, 아래 방법 중 1가지로만 충족해도 전공필수요건이 충족됩니다.

- 과목수: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필수 5과목을 모두 이수(이수 학점 관계없음)
- 학점수: 전공 연계자격 취득을 통해 전공필수 15학점이상 인정 (예. 전자산업기사 자격 취득 시 전공필수 16학점 인정)

■ 일반선택

일반선택 학점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학점이 아닌, 총 학점에 맞게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사학위 취득 시,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60학점과 교양 30학점을 충족하였다면, 나머지 50학점은 반드시 일반선택학점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공, 교양, 일반선택 학습구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공 혹은 교양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였다면, 초과되는 학점을 일반선택 학점으로 바뀌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그대로 전공 혹은 교양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학점은행제 각종 신청·접수는 정해진 기간 중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교육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장 명의 학위신청자는 해당 기관 또는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접수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전기(2월): 12월 15일~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 6월 15일~ 7월 15일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습도움방 → 각종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교육기관	전기(2월): 12월 1일~ 12월 14일 후기(8월): 6월 1일~ 6월 14일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문의
대학의 장 명의 학위	해당 대학		

[주의사항]

- ①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0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신청기간 이전까지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② 학위수여예정자는 학위신청기간에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함.
- ③ 학위신청 마감 후 학위요건심사가 완료되면 [학위합격/탈락여부]를 홈페이지
를 통해 공지(교육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명의 학위신청자는 해당
기관 또는 대학으로 통보)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함.

○ 학점은행제의 학위란?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호]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전공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 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학력인정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 학위수여 요건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수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①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②	전 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 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수로 충족하여야 함.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⑥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
⑦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수여 시에는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를 받게 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해야 함.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타 전공 학위수여 요건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위란,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선택하는 학위과정입니다.

[타 전공 학위수여 요건]

학사(타전공) 학위	전문학사(타전공) 학위	
	2년제	3년제
①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①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①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② 전공필수요건 포함해야 함.

③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자격,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해야 함.

학점은행제 타 전공 학사학위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새로운 전공분야의 전공학점을 48학점 이상 인정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타전공 전문학사학위는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새로운 전공분야의 전공학점을 36학점 이상(3년제는 42학점 이상) 인정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III 제도의 활용 및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도 활용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취득 가능한 국가 자격 혹은 응시가능한 주요 시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자격 발급 요건 혹은 시험 응시요건 등은 해당 자격 주관처로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자격(면허) 취득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

자격 명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 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학점은행제 학위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02-786-0845~7)
보육교사 2급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 관련 교과목이 기존 12과목(35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상향조정됨 (시행일:2014.3.1.). 단,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 2014년 전기(2월) 학위취득자까지는 종전 기준인 12과목(35학점)이상 을 적용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문의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평생교육사 2,3급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과목(평균 80점 이상)을 이수한 자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http://ledu.nile.or.kr , 02-3780-9757/9955)
건강가정사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학점은행제 학위 포함)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문의처: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02-2075-8706), 건강가정지원센터(http://familynet.or.kr . 1577-9337)
2급 정사서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 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문의처: 한국도서관협회(http://kla.kr . 02-537-6117)
아·미용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 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문의처: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 가까운 시·군·구청
한국어교원 2급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문의처: 국립국어원(http://kteacher.korean.go.kr . 02-2669-9671~3)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이 면 제되어,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학점은행제 청소년학 전공 으로 등록)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http://q-net.or.kr/site/jidosas . 1644-8000)

* 각 자격 요건은 자격 주관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격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격 주관처로 문의해야 합니다.

✖학습자의 TIP

“주의 사항”

- ①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
해야 함.
 -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중 일부만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후 나머지 교과목만 이수하
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교과목을 포함하여 새롭게 학위를 취득해야함.
 - 학위취득 시, 다음 학위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수한 교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남겨둔 경우,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교과목(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등)은 다음 학위과정 시
인정받을 수 없음
- ②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이수 시
주관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수강신청 및 실습을 이행해야 함.

○ 시험 응시 자격 부여

[학점은행제로 응시 가능한 시험]

시험 명	응시요건
국가기술자격 시험	■ 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대상학교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http://q-net.or.kr, 1644-8000)
독학학위제 시험	학점은행제로 일정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여야 하며, 3,4단계는 학점은 행제와 동일전공이어야 함. * 2단계: 35학점, 3단계: 70학점, 4단계: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본부 (http://bdes.nile.or.kr, 1600-0400)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문의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관리팀(http://cpa.fss.or.kr, 02-3145-7759, 7760)
사법시험	법학과목 35학점 이수한 자 ☎문의처: 법무부 법조인력과(http://www.moj.go.kr/baream, 02-2110-3397)
편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자세한 요건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
대학원 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 ☞ 자세한 요건은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로 문의

* 각 시험응시 요건은 시험 주관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시험 응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험 주관처로 문의해야 함.

■ 학점은행제도 이용 주의 사항

○ 학점인정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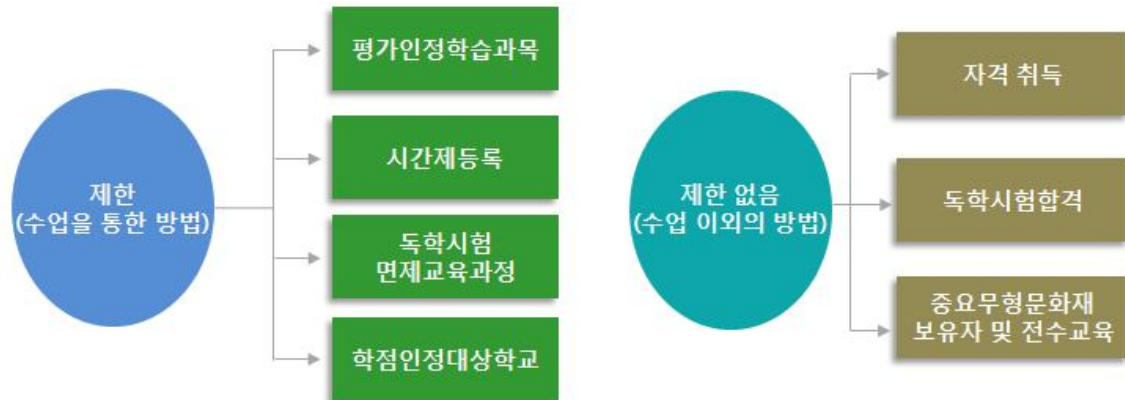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및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1학기의 구분]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 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1년/1학기의 구분]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은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 중복 과목 판단 기준

- [1]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3]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중복 과목 예시]

기준	예시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S/W 활용 = SW 활용 - EDPS = E.D.P.S - 한국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 학위취득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학위연계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혹은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 81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을 절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성적이 낮거나 혹은 학사학위과정에서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 중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학위수여 전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중요무형 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 가능함.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예정자 주의사항

- '학습자등록신청'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여 이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하였으나, 인정받지 않은 학점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병행하여 각 제도의 학위요건이 각각 충족될지라도 하나의 학위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개인 신청자	• 전기(8월)6월 15일부터 ~ 7월 15일 • 후기(2월)12월 15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기관 신청자	• 전기(8월)6월 15일부터 ~ 7월 15일 • 후기(2월)12월 15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해당 기관으로 문의
대학의 장 명의 학위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기관 신청자(대학의 장명의 학위수여예정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 기타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간호 · 보건계열 이용 안내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 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학 재적(재학, 휴학)중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학 재적학기 중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제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타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 학점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학 재적(재학, 휴학)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IV 학습지원 및 FAQ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종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구분	내용	형태
학위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 제출용, 재발급 가능	국문/ 영문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학점인정증명서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이수과목, 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기타	■ 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사법시험 제출용) ■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 교육비납입증명서	국문

[주의사항]

①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상에 성적이 기재되고 평점에 포함되는 학점원은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며, 학점인정대상학교, 자격,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성적이 기재되지 않으며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②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③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만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이 가능함(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한 과목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

○ 증명서 발급 방법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신청 방법	발급 수수료
인터넷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 신청]에서 '증명서 신청' 메뉴 클릭	국/영문: 500원 (추가 1통당 100원)
방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신분증 지참)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국문: 300원 영문: 500원
우편	'증명서발급신청서'와 '증명서 및 우편 수수료 입금증' 사본을 팩스(02-3780-9850)혹은 우편으로 송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알림방→자료실 574번 '증명서 발급안내 및 우편수령 신청서'] 참고	국문: 300원 영문: 500원 (우편수수료 별도)

[주의사항]

①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인터넷발급만 가능하며, 일정학점(전문학사: 40학점, 학사: 100학점)이상 인정받은 자만 발급 신청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습도움방→신청방법 안내→증명서신청] 내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

② <학위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학위취득일 이후 방문 혹은 우편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음. 단, <학위증>은 본인보관용으로, 재발급이 불가함.

③ 방문 신청 시,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학습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홈페이지 [알림방→자료실 523번 '증명서발급 위임장']에 위임장 탑재

④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 학점취득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없음.

■ 상담 서비스

○ 전화상담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600-0400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이용방법 : 문의사항에 따른 번호 선택 후, 안내 메시지에 따라, [개인정보(학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입력 후, 상담원이 연결됨.

✖ 학습자의 TIP

전화상담시 학습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상담내용은 학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 녹취 됩니다.

○ 온라인 일반 상담

학점은행제 관련 일반적인 질의사항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도움방 -> 상담 신청 -> 온라인 일반상담]에서 [문의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문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구분]

구분	내용
제도전반	학점은행제 제도 전반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음.
학점취득방법	6가지 학점취득방법과 세부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학점인정 신청/등록	학점인정신청기간, 신청한 학점의 처리유무, 환불사항 등과 같이 학점인정신청 및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중복과목	먼저, 홈페이지 상단[제도소개→제도이용 주의사항]중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부분을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중복여부에 대하여 과목 간 짝을 지어 문의할 수 있음.
학습구분	이수하거나 이수할 예정인 개별 학습구분의 희망전공에서의 인정 학습구분(전공, 교양 인정여부 등)을 문의할 수 있음. ※ 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체 학점에 대한 학습구분 문의는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 이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번 출구. 외교센터,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150M

- 주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외주제작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 제작년도 : 2013.12
- 참고 : www.cb.or.kr